

유권자가**참여**하는 희망의선거

선거과정과선거관리가 **공정**한선거

정당·후보자모두가승복하는 **화합**의선거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하는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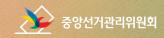


선거정보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선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로밝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월 1일(수) 투 표 오전 6시~오후 6시

사 전 | 5월 27일(금)~5월 28일(토) 투 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

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 교육자치

교육감선거

세종시(4장)

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5장)

교육감, 도지사,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재 ·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 (전국 11개 국회의원선거구)
- ※ 투표 시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교육감선거 더 알아보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순서가 바뀝니다.

※세종시와제주도는시·도의원지역선거구별로순차배정

선거권이 있는 사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국민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요 선거일정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꼭 확인해** 주세요!

1단계: 후보자 정보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 방문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거리 등에 게시된 선거벽보 살펴보기
5월 21일(토)부터 거리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확인 가능



- 세대마다 전달되는 선거공보 살펴보기
-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음
- 선거공보 두 번째 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상세한 정보 확인 가능
- 선거공보는 5월 22일(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2단계: 정책과 공약 확인



- 정책 · 공약마당(policy.nec.go.kr) 방문
-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과 선거공보를 확인하고 비교해보기
- 우리에게 필요한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 갈 수 있도록 희망공약을 제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 만들기



- 후보자토론회 시청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비교·검증
-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능

※ 토론회 미실시 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 다양한 정보 확인
- 방송ㆍ신문 등의 선거, 정치 관련 기사 확인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 · 대담 등 선거운동 살펴보기



유권자 선거참여

-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체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 (5월 10일~5월 14일)를 하면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월 27일~5월 28일)과 선거일(6월 1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 (5월 25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2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투표

일시

5월 27일(금)~28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신분증과 마스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쳐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주의하세요!

- 투표 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관내 선거인

자신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 4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
- ③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음
- ② 투표용지 7장 받음(세종 4장, 제주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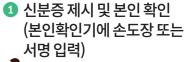
관외 선거인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 4 회송용봉투를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 ③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 ②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과 회송용봉투 받음
-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







- -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 추가 교부

▲ 사전투표관리관석 →

青田寺

선거일 투표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에서 확인 가능



신분증과 마스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쳐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선거일에는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합니다.

* 1차 투표용지(3장)

교육감선거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

선거

구·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 2차 투표용지(4장)

시·도

의원선거

(지역구)

시·도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 추가 교부

- ※ 세종) 일괄교부 4장: 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 ※ 제주) 1차 투표용지(2장): 교육감, 도지사 / 2차 투표용지(3장):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유효표와 무효표 예시

투표용지는 재발급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유효표



무효표





선거는 국가적으로 치르는 큰 행사로 사회각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선거는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며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뿐만이 아니라 투 · 개표 사무 종사자, 참여하는 유권자 그리고 정당 · 후보자까지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 * 선거사무 필요 인력: 사전투표 약 10만 명, 선거일 투표 약 19만 명, 개표 약 9만 명
- * 선거사무 필요 시설: 사전투표소 약 3,500 개소, 투표소 약 14,500 개소, 개표소 약 260 개소

투표 및 개표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투표참관인 제도를 운용하며, 사전투표함 등도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당 · 후보자가 선정한 사람, 일반유권자로 구성된 개표참관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 선거 관련 금전, 물품, 관광, 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 ✓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